|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의<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 공동 세무감사업무방법(임시시행)>배포에 관한 통지**  세총발[2016]84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열시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  중판(중화인민공화국 공산당중앙위원회 판공청) 및 국판(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판공청)이 배포한 <국세 및 지세 징수관리체계 개혁방안 심화>의 “국세 및 지세 공동 세무감사 실현”의 관한 요구를 구체화하고, 국세 및 지세 공동 세무감사 집행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국가세무총국은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 공동 세무감사 업무방법(임시시행)>을 제정하여 이에 배포하오니 집행하기 바랍니다. 집행 중 중요 상황과 관련 건의는 즉시 세무총국(감사국)으로 회신주기를 바랍니다.  국가세무총국  2016년6월6일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 공동 세무감사  업무방법(임시시행)  제1장 총칙  제1조 세무감사 집행자원 통합•조정, 국세 및 지세 공동 세무감사행위 규범화, 감사집행효율 강화, 다방면의 중복검사 방지 및 납세자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및 그 실시세칙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공동 세무감사라 함은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이 각자 직권과 법정절차에 의거, 공동관할 납세자에 대해 공동 세무감사를 전개하고 또한 전면적인 세무감사 집행협력을 실시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3조 공동 세무감사 업무내용은 협조체계 공동구축, 세무관련 정보공유, 임무 공동하달, 공동검사 실시, 안건심리 협력, 안건집행 협력, 세무감사 결과이용과 기타 세무감사 집행합작사항을 포함한다.  제4조 각 급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공동 세무감사 업무를 전개할 경우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5조 공동 세무감사 업무는 전면적 협조, 과학적 계획, 법에 의거 실시, 업무분장 합작, 실효중시의 원칙을 따른다.  제6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조직지도 강화, 소통채널 원활, 풍부한 공동 세무감사 업무내용, 지속적 공동 세무감사 업무방법 개선, 적극적 공동 세무감사 업무모델 탐색, 대대적 지지 및 충분한 보장과 순차적 공동 세무감사 업무를 추진시켜야 한다.  제7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공동 세무감사 업무상 임무를 조정하고, 각각 감사국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지정하여 구체적인 업무사항을 구체화시키고, 직위책임을 명확히 하여, 비밀유지관리 강화 및 집행위험을 대비하여야 한다.  제8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세무감사정보 공유제도를 마련하고, 또한 정보화 수단을 기반으로 공동 세무감사업무 정보관리플랫폼을 완전히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공동 세무감사 업무홍보 강화, 집행영향력 확대, 사회인식 응집 및 납세의무를 촉진시켜야 한다.  제10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공동 세무감사 업무의 감독검사에 대해 강화하고, 또한 공동 세무감사 업무상황을 심사의 중요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제2장 협조체계 공동구축  제11조 각 급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공동 세무감사 업무 지도그룹(이하 “지도그룹”이라 약칭)을 구성하고, 공동 세무감사 업무의 총괄계획 및 지도협조를 책임져야 한다. 지도그룹 팀장은 연도별 교대제를 실행하고, 국세 및 지세 세무감사 업무를 관리하는 국(局)장은 교대로 맡는다.  지도그룹 산하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공동 세무감사 업무의 연락논의 및 조직적 전개 등 구체적인 조직∙실현업무를 책임진다. 공동 세무감사 업무 지도그룹 사무실(이하 “연사판”이라 약칭) 주임은 연도별 교대제를 실행하고, 지도그룹 팀장이 소재지 세무국의 세무감사국 주요 책임자를 겸임한다.  지도그룹과 연사판은 공동 세무감사 업무의 조직부서와 업무요구에 대해,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 공동 공문발송 형식으로 하달한다.  제12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 세무감사기구 설치 및 관할 등급이 대등하지 않은 경우, 그 소재지 성(구, 시)연사판이 공동 세무감사 관련업무사항을 확정한다.  제13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공동 세무감사 업무일 연락논의와 상황통보 업무제도를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원칙상 매 6개월 1회 공동 세무감사 업무회의를 개최하고, 개최 전문주제의 필요에 따라 함께 회의에 참석하고, 공동 세무감사업무 부서를 함께 조직하여, 공동 세무감사 업무사항을 조사하고, 공동 세무감사 업무 중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한다.  조건이 되는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연사판 업무장소(사무실)를(을) 상설할 수 있다.  제14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세무감사 무작위 추출조사대상 명단을 만든 기초로 하여, 공동관할 납세자 명단을 함께 제작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공동 세무감사 업무를 연도 세무감사 업무상 임무에 추가하여야 한다. 매년 초 연도 세무감사 업무계획을 서로 통보하고, 연도 공동 세무감사 업무계획을 협상하여 확정하고, 관련업계, 지역 및 프로젝트를 선택하여 공동검사 업무를 전개한다.  제16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세무감사집행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세무감사 안건검사 중 상대방 관할범위와 관련된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상대방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7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공안 등 관련부문과 함께 공동집행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세무위법과 연루된 범죄행위를 협력하여 처벌하며, 공동으로 세금계산서 관련 사안 등 업무를 공동 전개하여야 한다.  제18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공동 세무감사 업무를 전개함에 있어, 대장을 만들고, 공동 세무감사 업무에 대한 분류별 관리, 성과통계 및 효과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3장 세무관련 정보공유  제19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세무감사정보의 공유협력을 강화하고, 각자 세수와 관련된 정보 출처경로를 확대하며, 세무감사집행 정보자원을 통합조정하여야 한다. 세무감사정보 공유합작의 내용은 안건출처정보, 안건단서, 조사처리성과, 증거자료 및 기타자료정보를 포함한다.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정보교환, 정보전달과 정보검색의 방식을 통해 세무감사정보 공유를 실현시킨다. 정보교환은 대량의 기밀이 아닌 안건출처정보와 관련자료정보를 공유에 주로 쓰이며, 정보전달은 안건단서, 조사처리성과와 관련증거자료를 공유하는데 주로 쓰이고, 정보검색은 안건조사 중 특정대상의 세수관련 정보를 공유하는데 주로 쓰인다.  제20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각 세무감사안건 출처정보 별로 수집, 분석 및 정리 후, 상대방 관할 또는 쌍방관할에 속하는 세목 위법행위단서의 안건출처정보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정보를 교환한다.  제21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각자 발견하여 조사∙처리한 중대세수위법안건의 경우, 모든 상대방 관할 세목과 관련된 구체적 안건단서는 즉시 상대방에게 전달함과 동시에 관련증거자료를 이관하여야 한다.  제22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세수고발안건 수리 및 협력조사안건을 수탁 전개 중 획득한 세수위법행위 단서정보가 모두 상대방 관할에 속하는 세목일 경우, 단서정보를 발견한 날로부터 15 영업일 내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즉시 조사∙처리될 수 있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제23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세무감사안건 검사업무수요에 근거하여, 상대방과 협조하여 안건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사용정보 및 특정 세무감사대상의 납세신고정보와 세무감사 정보내역 등 세수관련 정보검색을 진행한다.  제4장 임무 공동하달  제24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공동 세무감사 업무총괄계획과 임무에 근거하여, 세무감사 안건출처관리의 요구에 따라 공동 세무감사 대상을 확인하여 함께 협상 및 분류하여야 한다.  국가세무국 또는 지방세무국이 공동 세무감사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엄격히 국가세무총국이 제정한 세무검사 계획제도를 구체화하고 집행규정을 규범화하여, 다방면의 중복검사를 철저히 피하여야 한다.  제25조 안건출처를 신고 및 협력조사에 대해 국가세무국 또는 지방세무국은 공동관할 납세자의 비교적 확실한 세수위법행위 단서를 획득하고, 동시에 국세 및 지세세금과 관련된 납세 및 공동 안건검사를 전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동 세무감사 대상으로 협상하여 확정한다.  제26조 사건출처 교부, 독촉, 전달처리에 대해,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안건조사 실제수요에 근거하여, 공동 세무감사대상을 협상하여 확정한다.  제27조 안건출처의 배치 및 자율선정, 안건출처 및 기타 안건출처의 전달에 대해,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공동으로 세무감사 공동 무작위 추출조사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통일된 무작위 추출조사 방안을 협상하여 확정하여, 공동으로 정기 추출조사 또는 비정기 추출조사 방식을 취해 공동관할 납세자 명단 중에서 공동 세무감사 대상을 확정한다.  제28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다음 상황에 부합하는 공동관할 납세자를 공동 세무감사대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28.1 국가세무총국이 공동 세무감사를 전개하도록 요구한 경우  28.2 지방당 위원회, 정부와 상급기관이 처리를 맡기고, 독촉한 경우  28.3 상급 연사판이 공동 세무감사 전개를 지정한 경우  28.4 쌍방 모두 구체적 세수위법행위 단서를 획득한 경우  28.5 쌍방 중점세원에 공동으로 속한 경우  28.6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기타정황  제29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공동 세무감사 대상의 계획상황에 근거하여, 공동 세무감사 업무방안을 제정하고, 검사를 실시하는 시간지점, 검사소속기간, 검사진행보고시간, 검사성과통계시간 및 방식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업종, 지역 및 그룹기업 세무검사를 전개할 시, 공동 세무감사 대상의 성향 및 특징에 근거, 관할 세목에 맞춰 각각의 검사요강(초안)을 작성하고, 쌍방이 의견을 교환한 후, 공동 세무감사 요강을 완성하여 공동 세무감사업무를 지도하여야 한다.  제30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공동 세무감사 대상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기 전, 함께 입안을 구분하여야 한다.  제5장 공동검사 실시  제31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공동 세무감사를 전개할 경우, 각각 최소 2명 이상의 검사인원을 선발 파견하고, 공동검사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공동검사팀은 검사팀장 및 부팀장 각 1명씩 임명하고, 쌍방의 검사인원이 각각 담임한다. 팀장은 세무감사 대상의 전년도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 관할 세목 기납부 세금비율이 비교적 높은 세무기관인원이 담당하거나 또는 쌍방이 협상하여 결정한다.  공동검사팀 팀장 및 부팀장은 안건검사 업무의 협조, 소통과 조직을 책임지고, 구체적 검사업무의 방법, 진도와 요구를 협상하여 확정할 뿐만 아니라 검사인원 업무분장을 완성한다.  제32조 공동 세무감사를 전개할 시,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 검사인원이 다른 집행주체에 소속된 경우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책임권한을 분명히 하여, 법에 의거 각자의 집행절차를 이행하며, 집행문서를 각각 제작하여야 한다.  제33조 공동 세무감사를 전개할 시,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 검사인원은 호흡을 맞춰 긴밀히 협조하여, 공동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3.1 통일적인 방안을 제정한다.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 검사인원은 관할 세목에 근거하여 각각 검사 전개 전 분석하고, 검사중점을 교류하여 공동검사팀 팀장은 통일적으로 완전하고 구체적인 검사방안을 제정한다.  33.2 공동세무검사를 실시한다.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 검사인원은 세무감사 대상에게 각자의 세무검사증을 제시함과 동시에 <세무검사통지서>를 하달하고, 공동 세무감사 업무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검사수요에 근거하여 공동으로 세무감사 대상을 조직하여 자율 검사를 전개할 수 있다.  33.3 장부자료를 협상하여 회수한다.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 검사인원은 장부자료를 회수한 내용을 협상하여 확정하여야 하고, 공동검사팀 팀장은 소재지 세무기관에 있는 세무감사 대상에게 <장부자료회수통지서>를 제시하고, <회수장부자료목록>을 작성할 뿐만 아니라 관련 장부자료를 보관하며, 쌍방은 공동으로 사용을 열람하여야 한다. 회수장부자료문서를 제시하지 않은 일방은 증거수집요구에 따라 엄격히 법정절차를 이행한다.  33.4 전자데이터를 함께 수집한다. 전자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리와 계산된 공동 세무감사 대상에 대해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 검사인원은 세수 관련 전자데이터 수집이 필요한 경우, 쌍방이 전자데이터를 수집한 내용을 함께 협상하여 확정하여야 하고 함께 수집하여, 각자 예비용으로 사용한다.  33.5 협력 조사하여 증거를 수집한다. 세무감사 대상이 동시에 국세 및 지세와 관련된 동일세수위법행위에 대해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 검사인원은 협력하여 증서를 수집하고, 각자 안건증서를 보관하여, 각각 <세무감사업무초고>를 제작하여야 한다. 공동으로 세무감사대상에 대해 자문할 수 있으며, 그 진술 및 신변을 청취할 수 있다.  제34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 검사인원은 팀워크를 발휘해, 서로 협조 지지하고, 교류토론을 중시하며, 검사과정 중의 어려운 문제를 함께 조사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제35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의 검사인원은 공동 세무감사 안건정성을 연구 토론할 경우 동일 세수위법행위에 대하여 작성하고자 하는 세무처리증거와 처벌표준에 관하여 일치시키고, 또한 각각 상응되는 처리처벌건의를 제기한다.  제6장 안건심리협력  제36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공동 세무감사 안건에 대해 심리의견을 교환하고, 각각 심리를 진행하며, 동일 세수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정성(定性)과 세무처리처벌표준을 통일시킨다.  제37조 공동 세무감사안건 중,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의 세무감사 심리부문은 동시에 국세 및 지세와 관련된 동일세수위법행위의 정성(定性)과 세무처리처벌에 대해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 급 공동 세무감사업무 지도팀이 통일된 심리지도의견을 협상하여 제기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8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각자의 중대세무안건 심리표준에 근거하여, 세목 별로 세금이 이미 표준에 도달한 경우, 각각 <중대세무안건 심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39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각각의 <세무처리결정서>, <세무행정처벌결정서>, <세무행정무처벌결정서>, <세무감사결론>을 작성하고 난 후 10 영업일 내 서로에게 사본을 송부한다.  제40조 공동 세무감사안건이 공안기관에 이관하는 표준에 도달한 경우, 규정에 따라 이관수속을 처리함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안건이관상황을 통보한다.  제41조 공동 세무감사과정 중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이 사용한 각종 문서와 증거자료는 쌍방이 국가세무총국 관련 보존문서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각각 문서를 분류한다.  제7장 안건집행협력  제42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이 공동 세무감사 중 세무감사 대상이 납세의무행위를 회피정황이 있음을 발견하고, 세수보전 또는 강제집행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즉시 상대방에게 상황을 통보하며, 함께 협상하여 세수보전 또는 강제집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3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즉시 공동 세무감사안건의 각자 조사한 세금집행 진도상황을 통보하고, 쌍방과 관련된 기한 경과 불집행 세금에 대해서는 함께 협상하여 강제집행조치를 취한다.  제44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함께 강제집행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조치를 내려주기를 제기하는 경우, 각 세목 별 납부해야 할 세금 추납방안 방안에 관해 의견을 일치시켜, 세금집행에 공동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5조 공동 세무감사 안건이 세무행정재의, 행정소송과 관련된 경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각각 관련 및 행정법규 등 규정에 따라 업무를 전개하고, 쌍방은 상호지지 및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 시 파견인원이 상대방의 세무행정재의 및 행정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장 감사결과이용  제46조 공동 세무감사 안건을 제외하고,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세무감사안건 검사 중 취득한 세무조사성과가 상대측 관할 세목별 징수 및 조사에 영향을 끼칠 경우, <세무처리결정서>, <세무행정처벌결정서>를 매 분기가 끝난 날로부터 5일 업무일 내 상대방에게 대량의 사본을 보내야 하며, 상대방은 즉시 분석∙처리하여야 한다.  제47조 연합 세무감사안건이 세목별 금액, 위법유형, 세금계산서 일부 금액이 각각 중대세수위법안건 공시표준에 도달하는 경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이를 각각 공시하여야 한다.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공동으로 본 지역 관련부문과 소통과 협조하며, 공동징벌업무 현실화를 함께 추진하고, 이를 본 지역 사회신용체계 구축의 중요업무내용으로 삼는다.  제48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세무감사집행 분석과 조사를 공동으로 전개할 경우, 특정업종 공동 세무감사 업무의 연구토론과 총결에 대해 강화하고, 계속적으로 집행합작방식∙방법을 개선한다.  제49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공동으로 안건 조사 처리와 감사 현대화 건설경험교류를 전개하고, 선진경험 방법을 일반화하여 감사집행수준을 함께 제고시킨다.  제50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공동 세무감사 안건의 상세한 분석과 통계분석에 대해 강화하고, 공동으로 새로운 형식 하에 세수위법안건이 발생한 특징과 규율을 조사하고, 또한 중점단속을 전개한다.  제51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공동 세무감사 업무의 총결제고에 대해 강화하여야 하고, 공동으로 완전한 세수정책과 징수관리를 강화하는 의견을 건의하고, 양방향 조사관리를 실현시킨다.  제9장 부칙  제52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열시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본 방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53조 본 방법은 국가세무총국 세무감사국에서 해석을 책임진다.  제54조 본 방법은 배포일로부터 집행한다. |  | **国家税务总局关于印发《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联合稽查工作办法（试行）》的通知**  税总发〔2016〕84号  各省、自治区、直辖市和计划单列市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  为落实中办、国办印发的《深化国税、地税征管体制改革方案》关于“实现国税、地税联合进户稽查”的要求，规范国税、地税联合稽查执法行为，国家税务总局制定了《国家税务局 地方税务局联合稽查工作办法（试行）》，现印发给你们，请遵照执行。执行中的重要情况和有关建议，请及时反馈至税务总局（稽查局）。  国家税务总局  2016年6月6日  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联合稽查  工作办法（试行）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整合税务稽查执法资源，规范国税、地税联合稽查行为，增强稽查执法效能，防止多头重复检查，减轻纳税人负担，根据《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及其实施细则，制定本办法。  　　第二条 联合稽查，是指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依据各自职权和法定程序，对共同管辖纳税人开展联合进户稽查，以及全面实施稽查执法合作。  　　第三条 联合稽查工作内容包括共建协调机制、共享涉税信息、共同下达任务、联合实施检查、协同案件审理、协同案件执行、稽查结果利用和其他稽查执法合作事项。  　　第四条 各级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开展联合稽查工作，适用本办法。  　　第五条 联合稽查工作遵循统筹协调、科学规划、依法实施、分工合作、注重实效的原则。  　　第六条 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应当强化组织领导、畅通沟通渠道，不断丰富联合稽查工作内容，持续改进联合稽查工作方法，积极探索联合稽查工作模式，大力支持、充分保障和有序推进联合稽查工作。  　　第七条 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应当分解联合稽查工作任务，分别指定稽查局专门机构或专人落实具体工作事项，明确岗位责任，加强保密管理，防范执法风险。  　　第八条 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应当建立稽查信息共享制度，并依托信息化手段，建立和完善联合稽查工作信息管理平台。  　　第九条 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应当加强联合稽查工作宣传，扩大执法影响，凝聚社会共识，促进纳税遵从。  　　第十条 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应当加强对联合稽查工作的督导检查，并将联合稽查工作情况作为考核的重要内容。  第二章 共建协调机制  　　第十一条 各级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应当成立联合稽查工作领导小组（以下简称领导小组），负责联合稽查工作的统筹规划、协调指导。领导小组组长按年度实行轮值制，由国税、地税分管稽查工作的局领导轮流担任。  　　领导小组下设办公室，负责联合稽查工作的联络会商、组织开展等具体组织落实工作。联合稽查工作领导小组办公室（以下简称联查办）主任按年度实行轮值制，由领导小组组长所在税务局的稽查局主要负责人兼任。  　　领导小组和联查办对联合稽查工作的组织部署和工作要求，以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联合发文的形式下发。  　　第十二条 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稽查机构设置、管辖层级不对等的，由其所在省（区、市）联查办确定联合稽查相关工作事项。  　　第十三条 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应当共同建立联合稽查工作日常联络会商和情况通报工作制度。  　　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原则上每半年召开一次联合稽查工作会议，按需召开专题联席会议，共同组织部署联合稽查工作，研究联合稽查工作事项，解决联合稽查工作中遇到的问题。  　　有条件的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可以常设联查办办公场所。  　　第十四条 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应当在建立税务稽查随机抽查对象名录库的基础上，共同建立、维护共同管辖纳税人名录库。  　　第十五条 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应当将联合稽查工作列入年度税务稽查工作任务。每年初相互通报年度稽查工作安排，协商确定年度联合稽查工作计划，选取相关行业、区域、项目开展联合稽查工作。  　　第十六条 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应当加强稽查执法互助，对稽查案件检查中涉及对方管辖范围的执法事项，可提请对方进行协助，另一方应积极配合。  第十七条 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应当共同与公安等相关部门建立联合执法合作机制，合力打击涉税违法犯罪行为，联合开展发票整治等工作。  　　第十八条 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开展联合稽查工作应当建立台账，对联合稽查工作进行分类跟踪管理、成果统计、效果评价。  第三章 共享涉税信息  　　第十九条 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应当加强稽查信息共享合作，拓展各自涉税信息来源渠道，整合稽查执法信息资源。稽查信息共享合作的内容包括案源信息、案件线索、查办成果、证据资料及其他资料信息。  　　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通过信息交换、信息推送和信息查询的方式实现稽查信息共享。信息交换主要应用于共享批量非涉密案源信息和相关资料信息，信息推送主要应用于共享案件线索、查办成果和相关证据资料，信息查询主要应用于共享案件检查中特定对象的涉税信息。  　　第二十条 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采集、分析、整理各类稽查案源信息后，对属于对方管辖税种或者涉及双方管辖税种违法行为线索的案源信息，按规定进行信息交换。  　　第二十一条 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各自发现并查处的重大税收违法案件，凡涉及对方管辖税种的具体案件线索，应当及时向对方推送，并移交相关证据资料。  　　第二十二条 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在受理税收检举案件、开展受托协查案件中获得的税收违法行为线索信息，凡涉及对方管辖税种的，应当在发现线索信息之日起15个工作日内向对方推送，确保及时查处。  　　第二十三条 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根据稽查案件检查工作需要，协助对方进行涉案发票使用信息、特定稽查对象的纳税申报信息和历史稽查信息等涉税信息查询。  第四章 共同下达任务  　　第二十四条 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应当根据联合稽查工作总体计划和任务，按照稽查案源管理的要求，共同协商、分类确认联合进户稽查对象。  　　国家税务局或地方税务局选取联合进户稽查对象，应当严格落实国家税务总局制定的税务检查计划制度和规范进户执法规定，切实避免多头重复检查。  　　第二十五条 对检举案源、协查案源，国家税务局或地方税务局获得共同管辖纳税人较为明显的税收违法行为线索，同时涉及到国税、地税税款缴纳、有必要联合开展案件检查的，协商确定为联合进户稽查对象。  　　第二十六条 对交办案源、督办案源、转办案源，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根据案件检查实际需要，协商确定为联合进户稽查对象。  　　第二十七条 对安排案源、自选案源、推送案源及其他案源，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应当共同建立税务稽查联合随机抽查工作机制，协商确定统一的随机抽查方案，共同采取定向抽查或者不定向抽查方式，从共同管辖纳税人名录库中确定联合进户稽查对象。  　　第二十八条 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应当将符合以下情形的共同管辖纳税人确定为联合进户稽查对象：  　　（一）国家税务总局要求开展联合进户稽查的；  　　（二）地方党委、政府和上级机关交办、督办的；  　　（三）上一级联查办指定开展联合进户稽查的；  　　（四）双方均获得具体税收违法行为线索的；  　　（五）同属双方重点税源的；  　　（六）国家税务总局规定的其他情形。  　　第二十九条 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应当根据联合进户稽查对象的计划情况，制定联合进户稽查工作方案，明确实施检查的时间节点、检查所属期间、检查进度报告时间、检查成果统计时间、方式等。  　　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在开展行业、区域和集团企业税务检查时，应当根据联合进户稽查对象的性质、特点，分别针对所辖税种拟定检查提纲，双方交换意见后，形成联合检查提纲，指导联合进户稽查工作。  　　第三十条 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在对联合进户稽查对象实施检查前，应当同步分别立案。  第五章 联合实施检查  　　第三十一条 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开展联合进户稽查，应当分别选派不少于2名检查人员，组成联合检查组。  　　联合检查组应当设立检查组长、副组长各1名，由双方检查人员分别担任。组长由稽查对象上一年度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管辖税种已缴税款所占比例较高的税务机关人员担任，或由双方协商确定。  　　联合检查组组长、副组长负责案件检查工作的协调、沟通和组织，协商确定具体检查工作的方法、进度和要求，并做好检查人员工作分工。  　　第三十二条 开展联合进户稽查时，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检查人员隶属不同执法主体，应当分工明确、权责清晰，依法履行各自执法程序，分别制作执法文书。  　　第三十三条 开展联合进户稽查时，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检查人员应当步调一致、配合紧密，联合实施检查。  　　（一）统一制定方案。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检查人员根据管辖税种分别开展查前分析，交流检查重点，并由联合检查组组长汇总统一制定完整的、具体的检查方案。  　　（二）共同进户检查。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检查人员应当向稽查对象出示各自的税务检查证，同时下达《税务检查通知书》，并告知联合稽查工作事项。根据检查需要，可共同组织稽查对象开展自查。  　　（三）协商调取账簿资料。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检查人员应当协商确定调取账簿资料的内容，联合检查组组长所在税务机关向稽查对象出具《调取账簿资料通知书》、填写《调取账簿资料清单》，并保管相关账簿资料，由双方共同查阅使用。未出具调取账簿资料文书的一方，按照取证要求严格履行法定程序。  　　（四）同步提取电子数据。对采用电子信息系统进行管理和核算的联合进户稽查对象，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检查人员需提取涉税电子数据的，双方应当协商确定提取电子数据的内容，同步提取、各自备份使用。  　　（五）协同调查取证。对稽查对象涉及同时查补国税、地税税款的同一税收违法行为，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检查人员应当协同进行取证，各自保留案件证据，分别制作《税务稽查工作底稿》。可联合对稽查对象进行询问，联合听取其陈述、申辩。    第三十四条 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检查人员应当发挥团队合力，互相支持配合，注重交流讨论，共同研究解决检查过程中的疑难问题。  　　第三十五条 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检查人员共同研讨联合稽查案件定性，对同一税收违法行为，就拟作出的税务处理依据和处罚标准达成一致，并分别提出相应处理处罚建议。  第六章 协同案件审理  　　第三十六条 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应当对联合进户稽查案件交换审理意见，进行分别审理，对同一税收违法行为，统一定性和税务处理处罚标准。  　　第三十七条 在联合进户稽查案件中，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的稽查审理部门对涉及同时查补国税、地税税款的同一税收违法行为的定性和税务处理处罚，不能形成统一的意见时，应当提请本级联合稽查工作领导小组协商提出统一的审理指导意见。  　　第三十八条 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应当根据各自重大税务案件审理标准，对所辖税种的涉税款项已达标准的，分别按照《重大税务案件审理办法》的规定进行审理。  　　第三十九条 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在分别拟制《税务处理决定书》《税务行政处罚决定书》《不予税务行政处罚决定书》《税务稽查结论》后10个工作日内相互抄送。  　　第四十条 联合进户稽查案件达到向公安机关移送标准时，按规定办理移送手续，同时向对方通报案件移送情况。  　　第四十一条 联合进户稽查过程中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使用的各类文书和证据资料，双方根据国家税务总局有关案卷管理规定分别组卷。  第七章 协同案件执行  　　第四十二条 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在联合进户稽查中发现稽查对象有逃避纳税义务行为，符合税收保全或强制执行条件的，应及时向对方通报情况，并协商同步采取税收保全或强制执行措施。  　　第四十三条 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及时通报联合进户稽查案件各自查补税款执行进度情况，对涉及双方的逾期不执行税款，协商同步采取强制执行措施。  　　第四十四条 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拟同步采取强制执行措施或提请人民法院采取强制执行措施时，应当就各税种应缴税款追缴方案达成共识，并共同协调税款执行。  　　第四十五条 联合进户稽查案件涉及税务行政复议、行政诉讼的，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分别依据相关法律、行政法规等规定开展工作，双方应当互相支持和配合，必要时可派员参加另一方的税务行政复议、行政诉讼。  第八章 稽查结果利用  　　第四十六条 除联合进户稽查案件外，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在稽查案件检查中取得的稽查成果，涉及影响对方管辖税种征收、查补的，应当将《税务处理决定书》《税务行政处罚决定书》于每季结束之日起5个工作日内批量抄送对方，对方应及时分析处理。  　　第四十七条 联合进户稽查案件涉及税种金额、违法类型、发票份额分别达到重大税收违法案件公布标准的，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应当分别公布。  　　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共同与本地区相关部门进行沟通和协调，共同推动联合惩戒工作落实，将其作为推动本地区社会信用体系建设的重要工作内容。  　　第四十八条 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联合开展稽查执法分析与调查，加强对特定行业联合稽查工作的研讨和总结，不断改进执法合作方式方法。  　　第四十九条 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联合开展案件查办和稽查现代化建设经验交流，推广先进经验做法，共同提高稽查执法水平。  　　第五十条 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应当加强对联合进户稽查案件的剖析和统计分析，共同研究新形势下税收违法案件发生的特点和规律，以及开展打击的重点。  　　第五十一条 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应当加强对联合稽查工作的总结提炼，共同提出完善税收政策和加强征收管理的意见建议，实现查管互动。  第九章 附 则  　　第五十二条 各省、自治区、直辖市和计划单列市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应当根据本办法制定具体实施办法。  　　第五十三条 本办法由国家税务总局稽查局负责解释。  　　第五十四条 本办法自印发之日起执行。 |